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64

발의연월일: 2020. 9. 25.

발 의 자:이재정·장경태·양정숙

오영환 · 서삼석 · 전용기

전해철 · 조승래 · 하태경

안민석 · 김종민 · 류호정

홍기원 · 강득구 · 정청래

이상민 • 김영배 • 도종환

민병덕 • 허 영 • 최혜영

김예지 • 어기구 • 박홍근

아뉴진비 · 윤재갑 · 박성준

김상희 • 조정훈 • 고민정

김승남 • 이낙연 • 홍익표

김경협 · 남인순 의원

(35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선언하고, 한국수어의 보급·발전과 농인의 교육·사회·문 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20 16년에 제정된 것임. 그러나 현행법 제17조에서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,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지 않아 특정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수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 '2월 3일(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)'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,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, 국가기념일 지정 및 한국수어의 날 주간을 통해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화언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한국수어의 날)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, 한국수어의 날부터 1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한국수어의 날) 국가는 한	제17조(한국수어의 날) ① 농인등
국수어의 날을 정하고, 한국수	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
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	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
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	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
<u>있다.</u>	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
	며, 한국수어의 날부터 1주간을
	한국수어 주간으로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의 취
	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을 실시
	<u>할 수 있다.</u>